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056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박용갑·조인철·황명선

복기왕 · 이용우 · 박정현

한병도 · 김재원 · 강유정

김종민 · 문금주 · 조승래

장종태 · 황정아 · 정준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 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상당수가 여전히 경유자동차 로써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 여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의 시행시기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 이 있음.

이에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법률 제 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호에도"를 "제28조에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자동차가 없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 관이 고시한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법률 제193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행 아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 한 특례) 제28조에도----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u>신 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 외 대체 자동차가 없다고 인정되어 고 시한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 부개정법률 부칙 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제1조(시행일)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법률 제16305호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28조제3호, 제28조 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30 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 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 -202

<u>4년</u>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년-----.